

대외경제 전문가 풀 OECD 규제개혁 분과 (2005년 2차 발표회 및 간담회 보고)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 (간사)

1. 회의 개요

- 회의 시간: 2005년 9월 5일 (월) 19:00-21:00
- 회의 장소: 한국경제연구원 12층 회의실
- 참 석 자 : 김홍석 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3과장): 발표자
양준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간사
김종석 교수 (홍익대학교): 분과위원
김도훈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분과위원
김태윤 교수 (한양대학교): 분과위원
김진국 교수 (건양대학교): 분과위원
이성우 교수 (한성대학교,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관보 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정민 사무관: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외 약 5명

2. 발표 및 논의

☐ 발표논문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안): 대외비로 취급 요망

☐ 발표내용: 중소기업규제 혁신방안: negative 체계로 가는 멀고도 먼 길

- 한국은 1998년부터 규제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미미함.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부담이 크다고 간주함.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 negative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o 여기서 negative 제도란 원칙적으로 모두 자유이고 예외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제도를 의미함.
- 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 규제 negative system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완료단계에 있음.
 - o 2005년 8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이며, 12월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임. 총리실도 2005년 규제개혁 결과에 포함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Negative system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 o Negative system은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하여 3년간 유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o 기존 총 규제 7780건 중 중소기업에 관련된 규제는 5175건으로 간주됨. 이 중, 중소기업청은 각 부처에게 꼭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는 이 중 2612건을 선정하였음.
 - o 이 2612건의 필수규제를 중소기업청과 외부 전문가 팀이 검토하여 필수규제, 개선요구규제, 집행배제규제, 비관련규제 등으로 분류하였음.

- 필수규제란 중소기업에의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제이며,
 - 개선요구규제는 규제의 질적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준수부담의 경감이 가능한 규제로서, 특별법으로 해당규제의 품질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 집행배제규제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본 negative system이 실행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특별한 실익이 없는 규제들을 의미하며, 부담경감규제(중소기업의 준수부담이 규제의 편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규제) 산업단지차원규제(산업단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제의 속성을 변화시켜 필요가 없어지는 규제)와 성과화규제(성과화 규제로 품질을 개선하면 폐지될 수 있는 규제)를 포함함.
 - 비관련규제란 중소기업에 관련이 없거나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닌 업종에 해당하는 규제를 의미함.
- 분류작업의 결과, 부처가 제시한 2612건 중 필수규제는 676개, 개선요구규제는 180개, 적용배제 규제는 667개, 비대상규제는 1089개가 됨.
- 해당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오직 필수규제만을 지키도록하는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러한 산업단지는 규제자유구역이 됨.
- 개선요구 대상규제 및 산업단지 자율규제는 규제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함으로 하위법령에서 집합.
- 산업단지에 대하여 특례법을 일정기간(2~3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이러한 negative 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토론내용

- 규제 negative 제도의 성공적인 시범과 각종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최대한 숫자의 산업단지에서 negative 제도를 실시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부 부처는 시범 단지의 숫자를 줄이고 싶어함.
- 산업단지 내 대기업이 있는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negative 제도 안에서는 일부 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그 사회적 목표는 산업단지 담당자들이 자율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할 능력, 그리고 의지가 있을지 의문임.

3. 기타: 행정사항

- 발표자는 아직 이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문을 대외비로 취급해 주기를 바람.
- 2004년부터 KOPIE 규제개혁 전문가 풀 회의는 한국규제학회의 규제연구회(월례 세미나)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본 회의도 역시 규제연구회와 동시에 실시하였음..
- o 일상적으로 연구회 발표자료를 KIEP/KOPIE가 출판할 수 있으면 KIEP/KOPIE가 발표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본 회의의 경우, 발표자료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KIEP/KOPIE는 이를 출판할 수 없음. 따라서 발표비를 지원하지는 않기로 하였음.
- o KOPIE 전문가 규제개혁 분과위원은 모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규제연구회와 전문가 풀 회의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

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분과위원들은 평가하고 있음. 현재 규제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분과위원으로 초청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